학교 밖 청소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교 입학, 재입학 및 편입, 검정고시, 대안학교, 위기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1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4
1.1. 학교 밖 청소년 4
1.1.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4
2. 검정고시를 볼래요. 6
2.1. 학력 인정 시험 6
2.1.1. 학력 인정 6
2.1.2. 검정고시 7
3.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15
3.1. 재입학 및 편입학 15
3.1.1. 재입학 15
3.1.2. 편입학 17
3.2. 학비 지원 19
3.2.1. 교육비 지원 19
4. 학교(정규교육과정) 말고는 공부할 곳이 없나요? 23
4.1. 대안학교 23
4.1.1.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 23
4.2. 학력 인정 학교 25
4.2.1. 방송통신중·고등학교 25
4.2.2. 학력인정 학교 26
5. 돈을 벌고 싶어요. 29
5.1. 취업 및 아르바이트 29
5.1.1.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29
5.1.2. 취업 및 아르바이트 31
6. 노는 것도 열심히 할래요. 36
6.1. 청소년 문화 지원 36
6.1.1. 청소년 문화 활동 36
7. 도움을 받고 싶어요. 38
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8
7.1.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38
7.2. 건강검진 40
7.2.1.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40
7.3. 위기청소년 보호 41
7.3.1. 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41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1.1. 학교 밖 청소년

1.1.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

※ 다른 법령에서의 **청소년**의 범위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를 말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이란?

▪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2025학년도 한 해 동안 53,617명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2026 교육통계연보」(교육부), 2026].

학교 밖 청소년 유형

▪ 학업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비행형, 은둔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 교육정책포럼 308호, 2019).

구 분	내 용
학업형	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직업형	직업기술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취업 등
무업형	특정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비행형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 감독 받는 경우
은둔형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2. 검정고시를 볼래요.

2.1. 학력 인정 시험

2.1.1. 학력 인정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의2제1항).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이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에 해당하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5.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및 제98조의2제1항).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이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에 해당하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8. 7.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제98조의2제1항).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이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에 해당하는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1.2. 검정고시

학력인정 시험

학력인정 시험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

▪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교육정보시스템(NEIS)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4항).

> ※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검정고시 합격자가 대학입학전형 원서접수 시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려면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검정고시의 시행

▪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검정고시의 공고

▪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방법

▪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호).

응시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초졸검정고시”라 함)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응시하려는 초졸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사람
-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호)

▪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 제외)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응시원서

▪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 응시자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말함) 2장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 응시원서를 받은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본문).

▸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단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수수료

▪ 시험 응시 수수료 및 검정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의 면제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초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수학 제외)을 면제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합격 결정

▪ 검정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합격증서

▪ 초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증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를 수여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응시자의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포함. 이하 같음)에 따라 성적증명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및 합격증명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를 발급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방법

▪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중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

응시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중졸검정고시”라 함)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함)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
-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응시원서

-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 1부
  - 응시자사진 2장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 응시원서를 받은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본문).
-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를 첨부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본문).
  -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단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수수료

- 시험 응시 수수료 및 검정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시험과목의 면제

▪ 다음에 해당하는 중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합격 결정

▪ 검정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합격증서

▪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증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수여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 응시자의 신청에 따라 성적증명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및 합격증명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발급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방법

▪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호).

응시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고졸검정고시"라 함)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인정령」 제1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호)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
-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응시원서

▪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전 과목의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 포함)은 다음의 서류를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 1부
- 응시자사진 2장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 응시원서를 받은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항).

- 주민등록표 초본
-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
-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장애인증명서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기능사 이상 자격수첩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 최종시험 합격증명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를 첨부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항 본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수수료

▪ 시험 응시 수수료 및 검정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시험과목의 면제

▪ 다음에 해당하는 고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기술학교 등"이라 함)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2.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과목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5. 고등기술학교 등의 최종학년 재학 중 또는 3년제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 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 과목

합격 결정

▪ 검정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2015년 이전 고졸검정고시 응시자 중 선택Ⅱ 과목합격자가 고졸검정고시 합격결정을 위한 성적산정에 선택Ⅱ 과목 성적의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합격결정을 위한 성적을 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합격증서

▪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증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수여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본문).

▪ 응시자의 신청에 따라 성적증명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합격증명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대입전형용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를 발급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본문).

▹ 다만,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의 선택 II 과목의 성적을 합산 반영하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단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학력 조회 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거짓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합격을 취소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9항).

▪ 검정고시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합격(과목합격 포함) 후 위의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급한 증서 또는 증명서가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 초졸·중졸·고졸검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kice.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3.1. 재입학 및 편입학

3.1.1. 재입학

중학교 입학

입학

▪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 중학교 입학자격

▹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 입학 시기 등

▹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학교 입학방법

▹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다문화학생 제외)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제2항).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고등학교 입학

입학

▪ 고등학교 입학자격

▹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②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등)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이 입학 가능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

▪ 신입생 선발시기

▹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해지며, 전기학교와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 전기학교 >

√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다만,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는 제외함)

√ 특성화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 선발 가능)

< 후기학교 >

√ 전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평준화·비평준화지역의 일반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

▪ 입학전형 지원방법

▹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허가권자인 학교장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지원자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전기학교후기학교인지 또는 주간수업야간수업이 있는지에 따라 입학전형이 다르고, 또한 각 시도의 방침에 따라 지원자격 및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도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고입정보포털 홈페이지(http://www.hischoo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국학생 등의 입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그 밖에 귀국학생 등의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해외유학자』의 <귀국-귀국 후 조치-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2. 편입학

중학교 편입학

편입학

▪ 편입학 자격

- 편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 편입학의 허용

-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중학교,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편입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중학교의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중학교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고등학교 편입학

편입학 신청

-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본문).

> ※ 편입학 신청시기, 제출서류 및 접수처 등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지역, 학교 계열, 평준화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교육청 및 편입학 희망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고등학교 편입학의 제한

-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전단).

>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교육감은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 이 때 "거주지"란 친권자(「민법」 제909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28조)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며,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4항).

학력미인정 학교에 대한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7조).

귀국학생 등의 고등학교 편입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고등학교 편입학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고등학교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다문화학생 제외)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고등학교 편입학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제2항).

※ 그 밖에 귀국학생 등의 고등학교 편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해외유학자』의 <귀국-귀국 후 조치-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학비 지원

3.2.1.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 소득금액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위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3항).

교육비

▪ 지원 받을 수 있는 교육비란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급식비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용 도서 구입비
-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 그 밖에 위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 지원 신청은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 제3항제1호).

▪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4제3항·제4항·제5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가구원은 해당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따른 사람을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4제1항).

▹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19세 이상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말함)이 아닌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부모.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조부모로 합니다.

√ 형제자매. 다만, 성인인 형제자매는 교육비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배우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4제2항).

▹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그 밖에 지원 대상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달리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 및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등 교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학교(정규교육과정) 말고는 공부할 곳이 없나요?

4.1. 대안학교

4.1.1.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

대안학교란?

대안학교의 개념

▪ “대안학교”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하며, 대안교육 각종학교로 분류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1항).

※ 여기서 “각종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1항).

▹ 각종학교는 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와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4항).

대안학교의 학력 인증

Q. 대안학교에 간다면,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공립 대안학교와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경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를 이수할 경우 국가로부터 학력인증은 받을 수 없고, 학력취득이 필요한 경우, 검정고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과정을 이수하면 원적 학교의 졸업장을 수여받는 형식으로 학력인증을 받게 됩니다. 재학생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적을 둔 상태에서 위탁 교육을 신청해야 하며, 이미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의 경우 재입학(편입학)을 통해 학적을 회복한 후에 위탁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가형 대안학교

인가형 대안학교의 개념

▪ “인가형 대안학교”는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로 이를 졸업한 자는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학력인정

▪ 국·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과정

▪ 학기운영 및 학년제

▹ 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합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 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

√ 초등학교 수업연한: 6년

√ 중학교 수업연한: 3년

√ 고등학교 수업연한: 3년

▸ 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합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 교육과정

▸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 포함)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해야 합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 입학전형

▸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합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 인가형 대안학교 현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책-초·중·고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의 개념

▪ "위탁형 대안학교"는 일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학교부적응이나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성·예술·문화·진로교육 등의 대안교과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안내 참조).

지원자격

▪ 정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학적이 있는 학생만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형 대안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퇴학이나 자퇴를 한 학생은 지원할 수 없으며, 정규 학교 중퇴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을 통해 학적을 회복한 후에만 위탁형 대안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위탁형 대안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나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2. 학력 인정 학교

4.2.1.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의 개념

▪ “방송통신중학교”란 방송·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중등 교과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하며,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 홈페이지 참조).

입학자격

▪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①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제출서류

▪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입학안내-신입학).

- 입학원서 1부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중입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학력인정

▪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6조).

> ※ 방송통신중학교의 현황 및 입학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중학교 홈페이지> 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개념

▪ “방송통신고등학교”란 방송·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고교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하며,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방송통신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입학자격

▪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①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

제출서류

▪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방송통신고등학교-입학안내-신입학).

- 입학원서 1부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형료 등)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중학교 졸업(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학력인정

▪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6조).

> ※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황 및 입학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고등학교 홈페이지> 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2. 학력인정 학교

학력인정 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본문).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입학자격

▪ ① 초등학교 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 취학연령(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을 넘은 자로 하고, ② 중학교 과정인 경우에는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중학교 취학연령(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을 넘은 자로 하며, ③ 고등학교 과정인 경우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등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제47조제1항).

▪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 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위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16세를 넘은 자
-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역	학교
서울	서현초등학교,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신동신중정보산업고등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정암미용고등학교, 진형중고등학교, 청량정보고등학교, 청암중고등학교, 한림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
부산	국제금융고등학교, 부경보건고등학교, 부경보건고등학교 병설중학교, 부산경호고등학교, 부산예원고등학교, 부산예원고등학교 병설중학교, 부산조리고등학교
대구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
인천	남인천중고등학교,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대전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경기	계명고등학교, 안양상업고등학교, 부천실업고등학교, 고양송암고등학교, 진영고등학교, 진영중학교, 진영초등학교
강원	한국YMCA원주중고등학교
충북	예일미용고등학교
전북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군산평화중고등학교, 남일초중고등학교, 인화초중고등학교
전남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홍지중고등학교
경북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경남	경남미용고등학교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정책-평생교육-평생교육시설 검색)

※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전형, 일정 및 지원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 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돈을 벌고 싶어요.

5.1. 취업 및 아르바이트

5.1.1.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진로상담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 직업소개 및 관리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체험·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 및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직업상담 및 취업정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학교 밖 청소년 지원-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고용24(work.go.kr), 이용안내-정책/제도-고용정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개요 참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고용24(work.go.kr), 이용안내-정책/제도-고용정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개요 참조].

▪ 지원 대상

▹ I유형 선발형 청년특례의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24(work.go.kr), 이용안내-정책/제도-고용정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 참조].

▹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 등을 말합니다[고용24(work.go.kr), 이용안내-정책/제도-고용정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 참조].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과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work24.go.kr),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고용24(work.go.kr), 이용안내-정책/제도-고용정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내용 참조].

▹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60만원×6개월+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1명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고용24(work.go.kr), 이용안내-정책/제도-고용정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내용 참조].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 II 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급합니다[고용24(work.go.kr), 이용안내-정책/제도-고용정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내용 참조].

1.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 ~ 25만원(1회) 지원
2. 참여장려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고용센터(위탁기관)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 시 월 1회 2만원(최대 5회 10만원 한도)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 Ⅰ·II 유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참여자와 II 유형 특정계층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고용24(work.go.kr), 이용안내-정책/제도-고용정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내용 참조].

▪ 신청 방법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를 통해 신청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고용24(work.go.kr), 이용안내-

정책/제도-고용정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절차 참조].

> ※ 그 밖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work24.go.kr),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경험 사업

▪ "청년일경험 사업"이란?

▹ “청년일경험 사업”은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청년일경험 포털(yw.work24.go.kr), 사업소개-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 참조].

▪ 지원 대상

▹ 주로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청년일경험 포털(yw.work24.go.kr), 사업소개-주관기관별 일경험 사업 참조].

▪ 사업 내용

▹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청년일경험 포털(yw.work24.go.kr), 사업소개-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 참조].

√ (프로젝트형) 기업 현업에 기반한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안하고,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코칭,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 지원

√ (인턴형) 청년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을 강화

√ (ESG지원형) 기업이 ESG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 확대하여 운영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직무훈련, 일경험 등)

▪ 신청 방법

▹ 청년일경험포털(yw.work24.go.kr)에서 희망하는 지역, 직무, 프로그램 유형 등을 조건으로 참여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그 밖에 청년일경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년일경험 포털(y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2. 취업 및 아르바이트

일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

15세 이상인 청소년

▪ 15세 미만인 사람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는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본문).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가능한 나이

Q.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A. 운전면허는
면허 종류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1종
대형, 1종
특수면허 : 만
19세 이상으로
1,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사람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면허 : 만
18세 이상인
사람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만 16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이란?

▪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 단,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라면 13세 미만인 청소년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

> ※ 그 밖에 일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 및 취직인허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근로청소년』의 < 근로청소년의 구직-근로청소년의 연령 및 구직-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보건상 유해·위험한 곳에서의 근로 금지

▪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다음과 같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 및 별표 2 제2호).

▹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단, 주유업무는 제외)

▹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제3호)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현재 없음)

갱내근로의 금지

▪ 청소년은 갱내(坑內)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갱내근로가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 관리·감독 업무
- 위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 갱내근로는 작업장소가 갱내인 직·간접적인 업무, 사무업무 등 모든 업무가 갱내 근로의 범위에 포함되며, 갱내근로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도 일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와 사장님이 알아야 할 보호제도」, 2012, 12쪽 참조].

※ "갱내(坑內)"란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위해 파놓은 굴을 말하며, 광산의 경우 보통 지하에 있는 광물을 채굴하는 장소와 땅속에 있는 통로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와 사장님이 알아야 할 보호제도, 2012, 12쪽 참조].

청소년유해업소 등에서의 취업 금지

▪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모두 포함되며,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 "청소년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청소년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청소년은 이 장소에서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해서도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 ※ 그 밖에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청소년 유해환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이란?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청소년의 경우도 성인과 같이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그 밖에 청소년 근로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근로청소년』의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근로계약의 체결 등-근로계약의 체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활동과 학업의 병행

특별학급

▪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

▪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

산업체 경영자의 학업 지원

▪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그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53조제1항).

▪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특별학급이나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53조제2항).

※ 산업체의 경영자가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8조제1항제3호).

6. 노는 것도 열심히 할래요.

6.1. 청소년 문화 지원

6.1.1. 청소년 문화 활동

청소년 문화 지원

청소년 이용료 면제 및 할인

- 이용료 면제 및 할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제1항).
- 이용료 면제 및 할인 시설
  -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 이용료 면제 및 할인 대상 청소년
  -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이용료 면제 및 할인 이용 방법
  -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제3항).

학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Q. 저는 학교에 자퇴하여 학생증이 없는 데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발급

청소년증

- 청소년증(「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참조).
-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고궁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2항).

※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제3항제1호).

▪ 누구든지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3항).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제3항제2호).

청소년증의 발급신청

▪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진 1장

▪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해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 그 밖에 청소년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도움을 받고 싶어요.

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7.1.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 웹사이트 : 청소년1388 대국민포털(www.1388.go.kr)-청소년 지원서비스-학교 밖 청소년 지원
> - 상담전화 : ☎ 1388
> - 꿈드림 지역센터는 <청소년1388 대국민포털-청소년 지원서비스-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 주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상담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하여 실시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교육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의 학교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 직업소개 및 관리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체험·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 및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자립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함),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위기청소년 보호-위기청소년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2. 건강검진

7.2.1.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학교 밖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

대상

▪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건강진단 등의 방법

▪ 건강진단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방법에 따릅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실시계획 공고

▪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신청 방법

▪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결과 통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건강진단 등의 실시 후 30일 이내에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2항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

▪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8항).

※ 2016년부터는 건강검진 대상이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은 매 3년마다 실시하고 검진항목은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B형 간염검사 등입니다. 검진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며, 특히 건강관리가 취약한 가출청소년 등은 우선적으로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검진 기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7.3. 위기청소년 보호

7.3.1. 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위기청소년

▪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1항).

▪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에 대해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2항).

특별지원의 신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소년을 제외한 사람이 신청하려면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제1항).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소득·재산·공제 항목 조회를 통해 조사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제1호).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제2호).

특별지원 내용

▪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다만, 1. 및 2.에 따른 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또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 위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 및 4.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

▪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제1항·제2항).

▪ 또한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제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제1항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제외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훈련의 실시
-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청소년부모

▪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

청소년부모에 대한 각종 지원

▪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속하는 청소년부모 중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을 지원받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가족지원서비스

①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②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

③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등

④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

⑤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

√ 복지지원: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다음과 같은 복지지원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

① 청소년부모가 18세 미만인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②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③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④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⑤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부모가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제5항).

▪ 교육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5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5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①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③ 학습장애가 있거나 학업중단 또는 학업중단 위기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지원 등

④ 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봐주는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기술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5제2항).

>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업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①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②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③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6제1항).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6제2항).

쉼터 등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

- 학업중단 숙려제에 따라 자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예체능 활동,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제공됩니다.

▪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8항).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쪽].

-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된 학생
  -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 √ 미인정결석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 √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대안교육기관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쪽).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질병·병원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등 행정처분에 의거하여 학업이 중단될 예정이거나 중단된 학생
- 그 밖에 시도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및 횟수

▪ 학업중단 숙려제의 숙려기간 및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6쪽).

▹ 숙려기간: 최소 2주~ 최대 7주까지 운영

√ 시·도교육청 및 학생·학교의 상황에 따라 1주 운영 가능

√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포함

▹ 숙려횟수: 당해학년도의 숙려제는 원칙적으로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

√ 지역의 상황에 따라 참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학업중단 숙려제
Q.학업중단 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A. 학교의 장은 심리·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출처 :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20쪽>**

※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원칙적인 운영기준은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